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3280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위탁사무명: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위탁)
-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위탁계획), 제7조(의회 동의 등), 제13조(재계약) 등

○ 추진 필요성

-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2022. 3. 1. ~ 2027. 2. 28.) 만료 도래
-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4조제3항 의거 전문적인 관리 및 연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회에 한정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운영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 획득하여 재계약 타당성 확립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규정하는 보육사업
-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명 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위 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위탁기간	2022. 3. 1. ~ 2027. 2. 28. (5년) ※ 2022. 3. 2. 개원
시설규모	지상 1층 : 580㎡ / 옥외놀이터 : 277㎡
이용대상	하남시청 직원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
운영시간	평일 07:30 ~ 19:30
운영현황	현원 : 76명(정원 : 85명)
운영인력	원장 포함 21명

5. 민간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기간 : 2027. 3. 1. ~ 2032. 2. 28.(5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민간위탁사업 운영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 획득하여 재계약 추진
-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재계약 심사 예정
-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 (100점 만점)일 경우 선정 제외 및 공개모집 절차 이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614,200	- 운영비 : 614,200,000원 x 1식	전액시비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2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의거 민간위탁 방식 적정
 -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 증대
 -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성과 측정 가능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사업 연속성과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우선 검토

9. 성과평가 결과

- 큰 거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
- 일 시 : 2026. 5. 26.(화)
- 방 법 : 평가자 3인 성과보고서·평가표에 따라 현장방문 평가 실시
 - 외부평가자 : 한경국립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내부평가자 : 후생복지팀장
- ※ 보육 전문 외부평가자 포함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결 과 : 평점 96.6점(100점 만점)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

10. 향후 추진계획

- 2026. 10월 :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7. 2월 : 재계약 체결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불임1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4조(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방법 및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운영기간이 학기 중일 경우 학기 종료일로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3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 5.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1.>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9조(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등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3. 5. 1.>